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손영수	760220-*****	강원도 원주시 이화6길 **
안상태	721101-*****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 ***-****

2. 서류의 명칭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손영수	처분대상자는 前 농협은행(주) 소속 카드모집인으로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4.9.5.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	과태료 60만원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안상태	처분대상자는 前 (주)한국씨티은행 소속 카드모집인으로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3.6.3.~2013.8.2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	과태료 370만원

나. 유의사항

위 가.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상 불이익

-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
-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 1) 이의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반면,
- 2)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위 이의 제기를 통보하여 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